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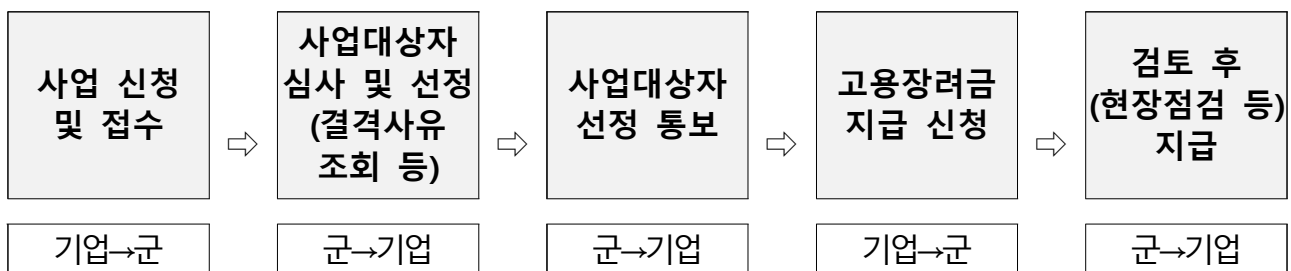
#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5차)

5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5차)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산 청 군 수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 사업기간: 2025. 1. ~ 12월
- 지원인원: 8명(기업당 최대 2명\*)  
\*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 10인 미만 1명, 10인 이상 2명**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산청군에 둔 5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 구직자를 **‘25. 1. 1. ~ 6. 30. 기간 중 신규 채용한 산청군 소재 중소기업(업종 무관)**
- 지원내용: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250만원) 지원
- 지원방식: 선정된 기업 중에서
  - ①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 ② 5개월간 임금 지급 후
  - ③ 고용유지 상태에서 고용장려금 신청 시 사업자에게 지급
- 지원절차



## 2 참여자격 및 결격사유

### □ 참여자격

<p><b>기업</b> *모든 요건 충족시</p>	<p>① 사업신청일 기준 <b>산청군 소재</b>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b>우선순위: ① 제조업 ② 5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b></p> <p>② 사업신청일 기준, <b>상시근로자 5인 이상</b></p> <p>③ '25. 1. 1. 이후, <b>5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b> - 최저임금(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급여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고용 후 5개월 이상 근무(임금지급 필수)</p>
<p><b>근로자</b></p>	<p>①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b>주소지를 산청군에 둔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b> <b>군민</b>으로, '24. 1. 1.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b>1961. 1. 1. ~ 1975. 12. 31. 출생자</b></p>

### □ 결격사유

<p><b>사업자</b>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선정 제외 대상이 됨</p>	<p>①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p> <p>② 동일 신중년 근로자 명의로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p> <p>③ 소비·향락 업체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b>사업자등록증 종목에 파견, 인력공급 명시된 경우 신청 불가</b></p> <p>④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p> <p>⑤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p> <p>⑥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p> <p>⑦ 일부 제한 업종 *<b>사행, 유흥업</b></p> <p>⑧ 2024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동일하거나 감소 시 사업 신청 불가)</p>
<p><b>근로자</b> *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함</p>	<p>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p> <p>②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p> <p>③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p> <p>④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사람</p> <p>⑤ 비상근 촉탁 근로자 ※ <b>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로, 정해진 날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근무</b></p> <p>⑥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p>

###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 8. 29.(금) ~ 11. 28.(금) 18:00까지 [3개월간]

※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pdf파일)

- 접수처 : 산청군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
- 이메일 : pn5534@korea.kr

□ 제출서류 ※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	제출서식	비고
<b>사업 참여 신청 시</b>		
·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서식2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서식3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4.12.31.기준)		2024년도 참여업체인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증빙서류(근로자 정보)		
근로계약서		정규직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2024.1.~현재)		신규채용 여부 확인
<b>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시*</b>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4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증빙서류	입금확인증/이체증명서	
통장 사본(기업 명의)		
출퇴근대장	※ 전자식/수기식 구분없음	

\* 고용장려금은 1인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신중년 근로자에 대한 5개월분 임금 지급 완료 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므로 중도 입사·퇴사에 따른 일할 계산은 인정하지 않음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대상자 선정: 매월 마지막 주 내부검토(서류검토 등) 후 선정

※ 결격사유 없을 시, 선착순 선정

※ 기 선정된 기업이 자격요건 등에 맞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신청기업 선정

○ 대상자 통보: 선정 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

## 4 기타사항 및 문의처

### □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참여자(사업자, 신중년 근로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참여 배제, 고용장려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비치, 보관하여야 함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시행 지침」(경상남도)에 의함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문 의 처: 산청군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 (☎ 055-970-6812)

- 붙임 1. [서식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서식2]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서식3]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1부  
4. [서식4]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끝.

## 서식1

#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참여신청서

###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고용보험 가입자수 (사업 신청일 기준)	명	인사노무 부서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024년 사업 참여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근로시간 관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자식 관리	<input type="checkbox"/> 출퇴근기록대장	<input type="checkbox"/> 없음
타 재정사업 참여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재정사업명 : )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2. 재직근로자 현황

① 재직근로자 현황 (사업 신청일 기준)	총 근로자수			명		
	정규직	명	만50세 이상 근로자수	명		
	비정규직	명				
② 근속기간별 근로자 현황 (사업 신청일 기준)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이상
	인원 수(명)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참여기업 자격요건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산 청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li> <li>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서식3)</li> <li>사업자등록증</li> <li>4대보험 사업자가입자 명부</li> <li>4대보험 완납증명서</li> </ol>
------	--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환수, 처분) 동의서

경상남도, 산청군은 참여자(사업자, 근로자)가 허위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확인될 시 사업 배제 및 고용장려금 환수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여자 결격사유 및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사업자 결격사유	근로자 결격사유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명단 공개중인 경우 2. 근로자가 타재정사업과 중복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3. 소비·향락 업체 및 파견, 공급업체 4. 4대보험 미가입 또는 4대보험료 체납사업장 5.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6.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 기관 7. 일부 제한 업종 (사행, 유흥업) 8. 직전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하며, 동일하거나 감소 시 사업신청 불가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4. 근로계약에 정함이 있는 사람 5. 비상근 촉탁근로자 6.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부정수급 관리

1. 유형
  - 사업자 결격사유, 근로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조치
  - 부정수급사항 확인 시 즉시 도에 통보하고 사업 참여 배제토록 함
  - 부정하게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함
  - 문서 위·변조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는 5년으로 함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위의 참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며,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처분이 진행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명 :	(인 또는 서명)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